00 2026년 토양개량제 지원사업(안)

Ⅰ 사업 개요

❑ 목 적

○ 유효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 및 산성토양에 토양개량제(규산·석회)를 공급함으로써 토양을 개량하고, 지력을 유지·보전

❑ 사업내용

○ 유효규산 함량이 157ppm미만인 규산 부족 논 및 화산회 토양의 밭, 산도(pH) 6.5미만의 산성 밭(과수원 등 포함) 및 중금속 오염농경지에 규산·석회비료 지원

❑ 지원자격 및 요건

○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써 토양개량제(규산, 석회) 공급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지소재지 읍·면·동에 토양개량제 공급을 신청한 자

❑ 지원내용 및 예산

○ 지원내용 : 본인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를 대상으로 토양개량제를 신청한 농업경영체에게 규산 및 석회비료 지원

○ 지원기준 : (규산) 국비 60%, 지방비 40%, (석회) 국고 80%, 지방비 20%
(공동살포) 국비 50%(최대지원단가 500원/20kg), 지방비 50%

* 지자체, 지역농협, 농업경영체 등 여건에 따라 공동살포비 추가 부담 가능

○ '26년 예산(안) : 59,468백만원(세종·제주 계정 포함 예산)

❑ 사업신청 및 대상자 선정

○ 사업신청 : 공급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지소재지 읍·면·동에 신청

○ 대상자선정 : 시·군·구는 신청면적, 토양검정에 따른 소요량 등을 감안하여 예산범위 내 대상자 선정

❑ 담당 기관 및 연락처

담당기관	담당과	담당자	연락처
농림축산식품부	첨단기자재종자과	사무관 유혜경	044-201-1898
농협경제지주	자재사업부	팀 장 오진석 계장보 유지수	02-2080-6401 02-2080-6408

Ⅱ 주요 내용

1. 사업대상자

○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라 본인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를 대상으로 토양개량제를 신청한 농업경영체

2. 지원자격 및 요건

○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(농업인, 농업법인)로써 토양개량제(규산, 석회) 공급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지소재지 읍·면·동에 토양개량제 공급을 신청한 자(이하 “농업인”)

3. 지원대상

○ 규산 및 석회질비료

- 규산 : 유효규산 함량이 157ppm미만인 규산 부족 논 및 화산회 토양의 밭
- 석회 : 산도(pH) 6.5미만의 산성 밭(과수원 등 포함) 및 중금속 오염농경지

* 토양검정결과 논에도 석회(패화석 포함) 공급이 필요한 경우 공급 가능

4. 지원자금의 사용용도

○ 농업인 신청에 의한 규산·석회질비료 구매, 공급 및 공동살포에 소요되는 제비용

* 개별살포는 공동살포비 지원대상에서 제외

5.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

○ 지원형태 : 자치단체 경상보조(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, 지역자율계정·세종·제주계정)

○ 지원조건 : (규산) 국비 60%, 지방비 40%, (석회) 국고 80%, 지방비 20%
(공동살포) 국비 50%(최대지원단가 500원/20kg), 지방비 등 50%

* 지자체, 지역농협, 농업경영체 등 여건에 따라 공동살포비 추가 부담 가능
예) 공동살포비 900원/20kg인 경우, 국고보조 450원/20kg + 지방비 등 450원/20kg
1,100원/20kg인 경우, 국고보조 500원/20kg + 지방비 등 600원/20kg

6.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

○ 농업인별 토양개량제 공급량은 농업인의 신청면적에 시·군 농업기술센터의 법정 리·동 단위 토양검정 결과에 따른 단위면적당 소요량을 반영하여 산정

* 단위면적당 소요량 이견이 있는 경우 예산사정에 따라 국립농업과학원과 협의를 거쳐 조정 가능

Ⅲ 사업 신청·선정

1. 사업 안내 및 신청

농림축산식품부

○ 3년 1주기 토양개량제 신청계획 및 시행지침을 시·도(시·군·구)에 시달(3년 1주기 첫해의 전년도 12월)

○ 차세대농업정보화추진단(이하 '추진단')은 시·도별, 시·군·구별 예산 신청내역 결과를 첨단기자재종자과로 전달(전년도 4월)

지자체

○ 시·군·구는 농식품부의 계획 및 지침에 따라 3년 1주기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시·도에 보고 및 읍·면·동에 안내(3년 1주기 첫해의 전년도 12월)

- 시·도는 시·군·구의 사업계획을 취합하여 관리
- 시·도(시·군·구, 읍·면·동)는 농업인에게 다양한 방법을 통해 사업 적극 홍보

○ 읍·면·동은 시·군·구 사업계획에 따라 토양개량제 공급신청서를 직접 또는 마을이장을 통해 신청을 받아 '농업e지'에 입력(2.28.까지)하고 시·군·구에 제출(농업e지·공문, 전년도 12월~2월)

- 중금속 오염 농산물이 생산된 농지 및 중금속 오염농지, 벼 깨씨무늬병 피해가 발생한 농지의 관할 시·군·구는 해당 농지 경작자(경작자가 미신청시 소유주에게 신청 안내)에게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을 신청하도록 하고, 신청된 농지를 사업 대상지로 우선 포함

○ 시·군·구는 읍·면·동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사업대상자 및 대상자별 공급면적을 '농업e지'에 입력·마감(3.15.까지)하고, 시·군·구 농업기술센터로부터 통보받은 단위면적당 기준소요량을 반영하여 공급물량을 산정하고, 농협경제지주의 토양개량제 단가를 반영하여 공급물량 및 예산신청서를 시·도에 제출(농업e지·공문, 전년도 3월)

○ 시·도는 시·군·구의 제출자료 및 시·군·구별 사업대상자, 물량 및 예산을 검토하고 '농업e지'에 입력·마감(4.15.까지)하고 공급물량 및 예산신청서를 농식품부에 제출(농업e지·공문, 전년도 4월)

* 예산신청서 양식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안 편성지침에 따름

사업대상자

○ **(3년 1주기 신규신청)** 사업대상자(농업경영체)는 토양개량제 공급신청서[별지 제1호 서식]를 작성하여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우편, 전자우편(이메일), 팩스 등으로 농지소재지 읍·면·동 또는 마을이장에게 제출하고, 마을이장은 농업인의 편의를 위해 토양개량제 공급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할 읍·면·동에 제출(3년 1주기 첫해의 전년도 12월~다음연도 2월)

- 경작농지가 2개 이상의 지역에 소재할 경우, 경작농지 소재지 행정구역이 시·군·구는 같고 읍·면·동만 다를 때에는 그 중 하나의 읍·면·동에 제출하고, 시·군·구가 다를 때에는 각각의 시·군·구에 제출하여야 함
- 사업대상자는 '농업e지'를 통하여 비대면 신청이 가능하며, 경작농지가 2개 이상의 지역에 소재할 경우 신청방법은 동일함

○ **(추가·변경신청)** 3년 1주기 신청을 누락하였거나 신청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추가·변경 신청하고 신청 방법은 신규 신청과 동일함(전년도 1~2월)

○ 토양개량제는 농업경영체 등록 농지를 대상으로 지원되므로 사업대상자는 농업경영체를 등록하여야 하며 경작면적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경영체 등록정보 지속 현행화 필요

2. 기준소요량, 공급물량, 공급단가 산정

가. 단위면적당 기준소요량 산정

농림축산식품부

○ 추진단은 해당연도 법정리·동 단위 토양개량제 기준소요량을 '농업e지'에 반영(전전년도 12월)

농촌진흥청

○ 시·군·구 농업기술센터는 농진청의 협조를 받아 대표 필지를 선정하고 해당연도 공급대상 지역을 대상으로 토양검정 시행(흙토람, 전전년도 10월)

- 각 시·군·구는 3년 1주기 사업계획 및 해당연도 공급대상지역을 각 시·군·구 농업기술센터로 공유하여 토양검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
- 농진청(식량산업기술팀 및 국립농업과학원 토양비료과)는 토양개량제 공급지역의 토양검정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도 및 교육 추진

○ 시·군·구 농업기술센터는 해당연도 공급대상지역에 대한 법정 리·동별 토양개량제 단위면적당 기준소요량 산정결과를 전전년도 10월 초순까지 흙토람에 입력하고, 국립농업과학원에서 검토하여 전전년도 10월 중순까지 확정하면 시·군·구 농업기술센터는 전전년도 10월말까지 시·군·구에 통보

* '28년 기준소요량 산정결과는 '26년 10월까지 제출

- 단위면적당 기준소요량 이견이 있는 시·군·구는 예산사정에 따라 시·군·구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국립농업과학원과 협의를 거쳐 조정 가능

○ 농과원은 해당연도 법정리·동 단위 토양개량제 기준소요량을 농식품부에 제공(공문, 전전년도 10월)

나. 공급물량 산정

농림축산식품부

○ 추진단은 지자체의 공급물량 산정내역을 첨단기자재종자과에 알림(전년도 5월)

지자체

○ 시·군·구는 신청면적 및 시·군·구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통보받은 단위면적당 기준소요량*을 반영하여 신청 농업인의 농지에 따라 공급물량을 산정하고 그 결과를 시·도에 제출(공문, 전년도 3월)

* '28년 기준소요량은 '26년 10월까지 제출·반영된 자료

○ 시·도는 시·군·구의 공급물량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농식품부에 제출(공문, 전년도 4월)

다. 토양개량제 단가 산정

농협경제지주

○ 농협경제지주는 토양개량제 구매 및 공급계약 체결(전년도 11월)

- 외부전문 기관을 통해 원가조사 및 예상소요물량에 따른 공급단가 입찰 후, 그 결과를 농식품부로 보고

* 규산 구매업체 조건 : 규산질비료의 품질관리 및 우수제품 공급을 위하여 규산질(입상)은 우수단체 표준제품(입상)을 우선 구매·공급 가능

* 석회 구매업체 조건 : 석회질비료의 품질관리 및 우수제품 공급을 위하여 석회고토(입상)는 우수단체 표준제품(입상)을 패화석은 GR인증제품(입상)을 우선 구매·공급 가능

- 제주계정으로 운영되는 제주지역의 공급단가는 해상운송비 지원지침(해수부 고시), 정부관리 양곡처리요율표의 해상운송비(항만하역료, 해상 운임) 등을 감안하여 달리 정할 수 있음

< 제 외 대 상 >

- 임원 또는 대표자가 보조금을 횡령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공급계약 체결 시까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업체
- 공급계약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에 관계기관에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보조금이 부당하게 지급되도록 한 업체
- 국세 및 지방세 등 세금 미납업체
- 비료관리법시행령 제12조에 따른 비료생산업의 시설 기타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업체
- 2025. 12월말 까지 [별표 1]의 사업참여 제한기준에서 정한 제한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업체

3. 토양개량제 공급계획 수립, 예산 배정 등

가. 토양개량제 공급계획 수립

농협경제지주

○ 농협경제지주는 토양개량제가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**토양개량제 공급계획**을 수립하여 농식품부, 지자체(시·도, 시·군·구), 농협 지역본부(시·군지부, 지역농협)에 통보(전년도 12월)

- 지역별 공급계획량에 대한 토양개량제의 종류별(비종별), 월별 소요량을 근거로 토양개량제를 적기 공급
- 친환경인증농가에게는 친환경인증농가가 사용가능한 물질을 조립제로 사용한 제품을 공급

* 친환경인증농가에 신청물량이 차질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공급

나. 예산 배정 등

농림축산식품부

○ 농식품부는 시·도에서 공급면적·물량, 농과원의 단위면적당 기준소요량, 농협경제지주의 공급단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특예산 편성 절차에 따라 요구되어 확정된 시도별 예산 배정(전년도 12월)

지자체

○ 시·도는 시·군·구의 공급내역과 지특예산 지출한도 등을 고려하여 시·군·구별 요구되어 확정된 예산 배정(전년도 12월)

○ 시·군·구는 선정 내역(선정면적, 단위면적당 기준소요량, 토양개량제 단가 등)과 예산 여건 등을 고려하여 사업대상자 및 공급물량 안내(전년도 12월)

Ⅳ 사업 시행

1. 토양개량제 공급

농협경제지주(지역농협, 공급업자)

○ 농협경제지주는 해당연도 토양개량제 공급계획에 따라 토양개량제 적기 공급

○ 지역농협장은 농협중앙회 시·군지부에서 통보받은 지역별(읍·면·동, 리별, 마을별 등 규모화된 지역) 공급계획량을 농업인(공동살포대행단)에게 적기에 공급 추진

- 지역농협장은 세부 착지별 300포(20kg 기준) 이상 및 톤백 공급일 경우 반드시 현장 확인하고, 300포 이하 공급할 경우에는 지역농협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인수 확인하여야 함

  * 마을 이장, 공동살포대행단 대표 등이 지역농협에 스마트폰 등을 이용하여 사진 전송한 것도 현장 확인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음. 단, 지역농협 담당자는 전송사진을 출력하여 증거로 확보

- 지역농협장은 공동살포를 원하지 않는 관외거주자 공급물량을 인수받아 토양개량제 공급확인서[별지 제2호서식]에 서명을 받은 후 농업인에게 공급

○ 공급업자(운송업자)는 물품을 현지에 수송, 해당 지역의 마을 이장(마을 이장 외 대표)에게 인계하고, 이장으로부터 토양개량제 납품확인서를 받아 지역농협장에게 제출

- 공동살포 물량에 대해서는 공동살포대행단 대표에게 해당 물품을 인계하고, 공동살포대행단 대표로부터 납품확인서를 받아 지역농협장에게 제출 가능

  * 단, 농업인별 공급확인서[별지 제2호 서식]에 농가 서명을 위하여 마을이장 협의 필요

- 공급단위는 포대(20kg), 톤백(500, 1,000kg)이고, 톤백 공급 시 비료생산업자 보증표를 톤백 우측 상단에 부착

지자체

○ 시·군·구는 지역별(읍·면·동, 리별, 마을별 대표 연락처 제공) 공급계획량(지역별 친환경 인증 농가의 신청물량 포함)을 농협중앙회 시·군지부에 유선 또는 공문 통보하여 지역농협의 토양개량제 공급 협조

○ 시·군·구는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마을 이장 외 대표를 지정하여 토양개량제 인수 및 배분 가능

○ 마을 이장(마을 이장 외 대표)은 공급업자로부터 인수한 물량(공동살포 물량 포함)을 농업인별 공급대상 면적 및 공급물량에 의거 배분하고 토양개량제 공급확인서[별지 제2호 서식]에 농가 서명을 받아 지역농협장에게 제출

* 다만, 관외 장기거주 등 부득이한 사유로 농가의 서명을 받기 어려울 경우는 해당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고 마을이장(마을이장 외 대표)의 사인으로 갈음할 수 있음

2. 토양개량제 살포

가. 개별살포

지자체

○ 시·군·구(읍·면·동)는 사업 상반기, 하반기 점검을 통하여 살포 여부를 연중 점검·확인

- 마을 이장(마을 이장 외 대표) 및 지역농협장은 농가 살포 여부를 점검하여 살포 확인서[별지 제2-1호서식]를 읍·면·동에게 제출(6월말, 11월말)
- 읍·면·동은 공동살포를 원하지 않는 관외거주자의 개별살포 확인

사업대상자

○ 공동살포를 원하지 않는 관내거주자는 마을이장에게, 관외거주자는 지역농협장에게 토양개량제를 인수하여 개별적으로 살포하여야 함

나. 공동살포

지자체

<공동살포운영위원회 구성>

○ 시·군·구는 공동살포와 관련한 주요 의사결정을 위하여 토양개량제 공동살포운영위원회를 구성

- 공동살포운영위원회는 지자체 및 농업기술센터 공무원, 농협 임직원, 이장, 작목반장 등으로 구성하고 구성인원은 7명 이상으로 함
- 공동살포운영위원회의 결정 사항은 토양개량제 공동살포 지역(2~5개 구역) 구획, 관내 특정 지역농협의 공동살포 인정 여부 및 대행자 선정 방법 등을 결정

<공동살포대행단 선정>

○ 시·군·구는 토양개량제 살포와 관련하여 공동살포 계획을 수립하고, 원활한 토양개량제 살포를 위하여 토양개량제가 농업경영체에 공급되기 전에 공동살포운영위원회가 정한 공동살포 대행단 선정 방법에 따라 대행단 선정

- 공동살포 대행단은 농축협, 영농법인, 농업회사법인, 작목반, 공급업체, 기타 살포 업체 등에서 선정하되 살포 능력*, 지역 농업인의 선호도, 작업단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

* 공동 살포율을 높이기 위해 지역 내 규산질·석회질 토양개량제 모두를 살포할 수 있는 공동살포 대행단을 선정해야 하며, 공동살포 지원물량은 공동살포 대행단을 구성하는 개인이 개별 살포하여서는 안 됨

○ 지자체 또는 공동살포운영위원회는 선정된 공동살포 대행단 대상으로 기후 및 외부환경 영향으로 인한 무리한 살포 작업 방지를 위해 살포 일정 및 물량을 적정 안배하고, 「비료관리법 시행규칙」 [별표3]에 따라 토양개량제를 적정하게 보관·살포하도록 안내

<공동살포 추진>

○ 시·군·구는 공동살포 계획, 공동살포 운영위원회가 결정한 공동살포 지역의 구획 및 공동살포 대행단 선정 결과를 농협 시·군 지부 및 지역농협장에게 통보

- 공동살포 계획은 공동살포 및 개별살포 대상 필지의 확인, 공동살포 비용 결정, 공동살포운영위원회 구성, 공동살포 추진 일정 등을 포함

- 마을 이장 등 경작자 대표는 시·군·구가 주관하는 토양개량제 공동살포 작업 및 지역농협장이 담당하는 살포 작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

- 관외거주자에 대한 공급물량도 공동살포에 포함하되, 관외 거주자가 공동살포를 원하지 않을 경우는 관외거주자가 개별살포함

- 공동살포의 경우 공동살포대행단은 살포 여부에 관해 농가의 확인을 받은 후 공동살포 확인서[별지 제2-2호서식]를 지역농협장에게 제출

* 공동살포 지역의 구획은 반드시 인근 지역을 묶어서 구획할 것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, 관내의 살포 작업이 어려운 필지가(예. 밭) 구획된 지역에 골고루 배분되도록 노력

* 관내 특정 지역농협이 관할지역의 공동살포를 계획하고 공동살포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 지역 구획 대상에서 제외

* 관내 특정 지역농협에서 공동살포를 하고자 할 경우 관할지역 내 토양개량제 공급 필지(개별살포 필지 제외)를 모두 포함해야 하고, 공동살포 대상 필지는 당해 시군의 논 면적 대비 밭 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밭 면적을 공동살포 대상으로 확보하여야 함(관할구역 내 밭 면적이 부족할 경우, 공동살포 운영위원회의 협조하에, 타 지역을 포함하여 공동살포 밭 면적 확보 필요). 다만 공동살포운영위원회가 지역 여건상 밭 면적을 확보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밭 면적 확보 조건 적용 제외 가능

지역농협

○ 지역농협장은 시·군·구로부터 통보받은 공동살포 계획, 공동살포 운영위원회가 결정한 공동살포 지역의 구획 및 공동살포 대행단을 반영하여 공동살포 지원 세부계획을 수립·확인하고 토양개량제가 적기에 살포될 수 있도록 조치

* 관할 특정 지역농협에서 공동살포를 계획하여 시·군·구의 공동살포 구획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지역의 구획 및 대행단 선정의 내용은 적용받지 아니함

공동살포대행단

○ 공동살포 대행단은 공동살포 완료 후 공동살포 확인서[별지2-2호 서식]에 살포 대상 농업경영체 및 현장 확인 가능한 자로부터 살포 확인을 받아 지역농협장에게 제출

V 사업점검 및 사후관리

1. 사업점검

가. 공급 및 살포 점검

농림축산식품부

○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상반기 현장점검 계획 수립 및 점검

○ 토양개량제 공급 및 살포 등 제반 업무에 대한 평가

지자체

○ 시·군·구는 상·하반기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, 반기별로 공동살포 및 개별살포 여부 등에 관한 이행점검 결과를 시·도를 거쳐 농식품부에 보고

* 상반기 살포 점검시 농식품부의 계획에 따라 지자체간 교차점검 시행

○ 지자체(시·도, 시·군·구, 읍·면·동)는 토양개량제 신청 농가에 토양개량제를 공급하고, 공급된 토양개량제가 농지에 살포될 수 있도록 현장 지도 및 점검 시행

- 읍·면·동은 토양개량제 신청 농가가 공급받았는지, 공동살포 대행자가 정상적으로 살포를 하였는지, 개별살포 농가가 토양개량제를 농지에 살포하였는지를 확인하고 미살포 시 살포 대책 마련 및 추진
- 현장점검에서 문제점과 건의 사항 등 의견을 수렴하여 현장 조치하고, 필요시 개선방안 검토

나. 품질검사

지자체,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

○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(농관원)과 지자체(시·군·구)는 토양개량제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비료 공정규격 준수 여부 등 적합 여부를 업체별 연 1회 이상 품질 검사

- 단 민원 발생 등 필요시 수시 검사 할 수 있음

○ 시·군·구는 토양개량제 공급업체의 검사용 시료를「비료의 품질검사 방법 및 시료채취기준」(농진청 고시)에 따라 채취하여 농촌진흥청장이 지정·고시한 비료의 시험연구기관(이하“시험연구기관”이라 한다)에 검사 의뢰

- 필요시 농관원에서 직접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할 수 있음

○ 시험연구기관장은 검사 완료 후 검사 의뢰한 농관원 및 시·군·구에게 그 결과를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함

○ 농관원 및 시·군·구는 검사성적이 부적합할 경우에는 해당업체 명단과 검사결과 등 구체적 내역을 신속 투명하게 농협경제지주에 통보(해당 연도 6월)

다. 유통단속 검사

지자체,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

○ 농관원 및 시·군·구는 토양개량제 품질검사 이외에 비료관리법 및 본 사업 지침에 따라 비료관리법 및 본 사업 지침 위반 여부 등 유통단속 검사 시행 및 조치

○ 농관원 및 시·군·구는 유통단속검사 실시결과, 위반사항을 적발할 경우에는 농관원 및 농협경제지주에게 통보(해당 연도 6월)

2. 사후관리

지자체

○ 시·군·구(읍·면·동)는 지역농협의 토양개량제 공급 결과를 확인하고 미수령 및 미살포 방치물량은 회수하여 시·군·구에 배정된 물량 안에서 자체적으로 추가신청을 받아 재배정

- 재배정 결과는 ‘농업e지’에 입력하고 추가공급 대상 및 물량을 농협 시·군지부(지역농협)에 통보(7월)

○ 시·군·구는 공동살포의 경우 주기적으로 토양개량제 공동살포대행단의 살포 진행 상황 점검, 살포여부 허위 보고시 해당 공동살포 대행자는 향후 3년간 공동살포 대행단에 참여 제외

○ 시·군·구(읍·면·동)는 개별살포의 경우 상·하반기 현장점검을 통해 살포 여부를 확인하고, 토양개량제를 미살포(방치)하거나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농업인은 다음 주기(3년 주기) 공급대상자에서 제외

- 1차 확인(방치 우려) : 농업인과 협의하여 살포 기간을 지정하여 살포하도록 조치(살포 예정일 확정)

  * 다음 작기 사용을 희망하는 등 살포 기간이 길어지는 경우 기한(6개월 이내)을 정하여 분실·훼손되지 않도록 보관·포장 등을 하도록 조치(보관·포장 예정일 확정)

- 2차 확인(조치사항 미이행) : 살포 기간 내에 살포하지 않거나, 조치사항 미 이행시 다음 주기 지원 대상에서 제외

- 미살포 물량은 다음연도 살포대상 농지에 살포하거나 기존 농업인 중 추가 살포를 희망하는 농업인에게 제공하여 살포

  * 미살포(방치) 확인, 물량은 '토양개량제 미살포(방치) 확인서'(별지 제3호 서식)를 징구하여 처리

- 미살포 농업인에 대한 이력 관리는 '농업e지'에 반영하여 다음 주기 공급시 지원에서 제외하도록 조치

  * 상반기 및 하반기 토양개량제 살포 시기 이후에 현장 확인 등 조치(5월, 11월)

농협경제지주

○ 농협 시·군지부(지역농협)는 사업대상자의 경작 관계 변경 등으로 미수령 물량을 지자체에 통보하여 추가신청을 받아 공급도록 조치

- 지역농협은 시·군·구의 재배정 결과에 따라 토양개량제 공급

3. 제재

농협경제지주

○ 농협경제지주는 농관원 및 시·군·구로부터 부적합 통보를 받은 즉시 위반업체에 대하여 비료 공급 중단·회수하고, 품질검사 및 유통단속 검사 결과를 [별표1]의 위반사항에 적용하여 사업 참여 제한

- 시·군·구의 행정처분 등 조치 결과 여부와 관계없이 위반사항에 대하여 참여 제한기준 적용

지자체

○ 시·군·구는 품질검사 및 유통단속 검사결과 위반업체에 대하여 비료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 등 조치

VI 자금 배정 및 집행

1. 자금배정

농림축산식품부

○ 시·도에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및 자금 교부(e-호조·디브레인 등, 연중)

지자체

○ 시·도는 농림축산식품부에 보조금 교부 신청 및 시·군·구별 예산 교부(e-호조)

2. 집행정산

지자체

○ 시·군·구는 농협 시·군지부에서 제출한 토양개량제 공급결과(매출증빙 자료, 공급확인서 및 공동살포확인서 등)를 면밀히 확인하고 보조금 집행(e-호조)

- 시·군·구는 토양개량제 보조금 교부시에는 농협에서 토양개량제 공급확인서와 공동살포 관련 보조금 교부시에는 공동살포 확인서를 제출토록 함

  * 공급확인서, 공동살포확인서는 농가별 물량과 서명이 모두 확인된 경우에 한함

- 시·군·구는 매월 지역농협이 농협 시·군지부에 제출한 토양개량제 공급확인서를 수령하고 면밀히 검정 후 토양개량제 보조금을 지급하고, 공동살포 확인서를 수령하고 면밀히 검정 후 공동살포 보조금 지급

- 시·군·구는 지방비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, 불가피하게 지방비 확보가 지연될 경우에는 국고보조금 우선 지급 가능

농협경제지주(시·군지부, 지역농협)

○ 지역농협은 공급확인서[별지2호 서식] 및 공동살포확인서[별지 제2-2호 서식] 등을 농협 시·군지부에 제출

  * 공동살포 대행단이 제출한 공동살포 확인서에 따라 실제 살포 여부를 최종 확인

○ 농협 시·군지부는 농협 전산시스템의 토양개량제 비종별 공급자료 및 토양개량제 공급확인서(별지 서식, 농가별 물량과 서명이 모두 확인된 경우에 한함)를 매월 15일까지 시·군·구에 제출

Ⅶ 평가 및 환류

1. 사업성과 측정

가. 성과지표 측정

농진청(국립농업과학원)

○ 전년도 규산 사용 필지에 대하여 유효규산함량, 전년도 석회시용 필지에 대하여 토양산도를 측정하여 목표치 달성 여부 평가

○ 토양개량제 성과측정은 전국 농경지 중 시·군·구 농업기술센터에서 검정하여 흙토람 시스템에 입력한 결과를 근거로 산정하고, 성과목표는 전국 농경지의 토양개량을 위해 전국 농경지 토양개량 효과를 평균하여 설정

- 규산의 경우 유효규산함량, 석회의 경우 산성도 측정

○ 각 시·군·구 농업기술센터는 농촌진흥청(기술보급과)의 협조를 받아 농경지 토양검정을 실시하고 검정 결과를 흙토람 시스템에 입력

○ 농과원은 흙토람의 전년도 토양검정결과를 토대로 토양개량효과 산정(익년도 2월)

나. 만족도 조사

농협경제지주

○ 농협경제지주는 농가, 토양개량제 공급 담당 공무원, 농협 직원대상으로 공급에 대한 만족도 등 의견 수렴(매년 하반기, 익년도 월 결과보고)

다. 환류

○ 토양개량제 신청 및 공급이 집중되는 시기에 현장점검을 실시하고, 문제점, 건의 사항 등 의견을 수렴하여 현장 조치하고 필요시 개선방안 검토

2. 사업 실적 및 정산보고서

지자체

○ 시·도(시·군·구)는 농식품부 양식에 따라 토양개량제 공급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(익년도 3월)

농협경제지주

○ 농협경제지주는 토양개량제 공급실적 및 만족도 조사결과를 농식품부로 보고(익년도 3월)

[별표1]

공급업체 보조사업 참여 제한기준(토양개량제)

위 반 사 항	사업참여 제한기준	비 고
1.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시료 채취 또는 자료 및 서류의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때	- 1회 : 1년 - 2회 : 2년	횟수는 위반 후 1년 기준
2. 유해성분량 기준초과 - 1% 이상 10% 미만 - 10% 이상 20% 미만 - 20% 이상	 - 1년 - 2년 - 3년	
3-1. 주성분량 또는 보증성분량(중량 포함) 기준미달 - 1% 이상 10% 미만 - 10% 이상 30% 미만 - 30% 이상	 - 6개월 - 1년 - 2년	
3-2 그 밖의 규격(분말도, 붕괴도, 염분, 입도, 수분 등) 기준미달 - 1% 이상 10% 미만 - 10% 이상 30% 미만 - 30% 이상	 - 6개월 - 1년 - 2년	
4. 비료공정규격에서 정하는 원료외의 물질을 사용하여 제조한 비료를 공급한 때	- 2년	비료관리법시행규칙 제16조 제2항 적용
5. 등록한 제조원료 외의 물질을 사용하여 제조한 비료를 양도·진열·판매·유통 또는 공급한 경우	- 2년	〃
6. 비료생산업 등록기준 미달	- 1년	〃
7. 사업참여 신청 시 허위서류를 제출한 때	- 1년	
8. 공급한 비료의 품질이 불량하여 사용한 농작물에 피해가 발생한 때	- 1년	
9. 무포장(벌크 형태 등) 형태로 판매하는 경우	- 2년	
10. 보증표시 위반 가. 보증표시를 하였으나,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표시하지 아니한 비료를 생산하여 보관·양도·진열·판매·유통 또는 공급한 경우 1) 생산년월일 2) 사용상·보관상 주의사항 3) 생산업자 주소 및 명칭	- 6개월	

위 반 사 항	사업참여 제한기준	비 고
나. 보증표시를 거짓으로 하였거나, 전부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표시하지 아니한 비료를 생산하여 보관·양도·진열·판매·유통 또는 공급한 경우 1) 등록번호 2) 비료의 종류 및 명칭 3) 실중량 또는 실용량 4) 보증성분량 5) 원료명 및 배합비율 6) 제조장의 소재지 및 명칭	- 1년	
11. 톤백으로 공급할 경우 - 비료생산업자 보증표를 톤백에 부착하지 아니한 경우	- 1년	

※ 이 사업참여 제한기준은 위반업체의 법인명칭 또는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됨(위반한 당해 제조장에 대하여 적용)

※ 2개 비종 이상의 토양개량제를 공급하는 업체에서 한 가지 비종의 토양개량제가 위반되더라도 사업참여 제한은 2개 비종 이상 비료에 모두 적용함

※ 위 제한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비료관리법에 위반하는 사안으로 비료관리법의 처분이 영업정지 1월·2월·3월인 경우는 각각 1년·2년·3년의 사업참여 제한을 적용함

※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참여제한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참여제한기준에 따름

※ 사업참여 제한기간이 6개월 이내인 업체로서 다음연도 사업의 계약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업체의 전년 계약물량의 30%를 축소하여 계약할 수 있음(다음연도 사업계약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않음)

[별표2]

토양개량제 지원사업 추진 체계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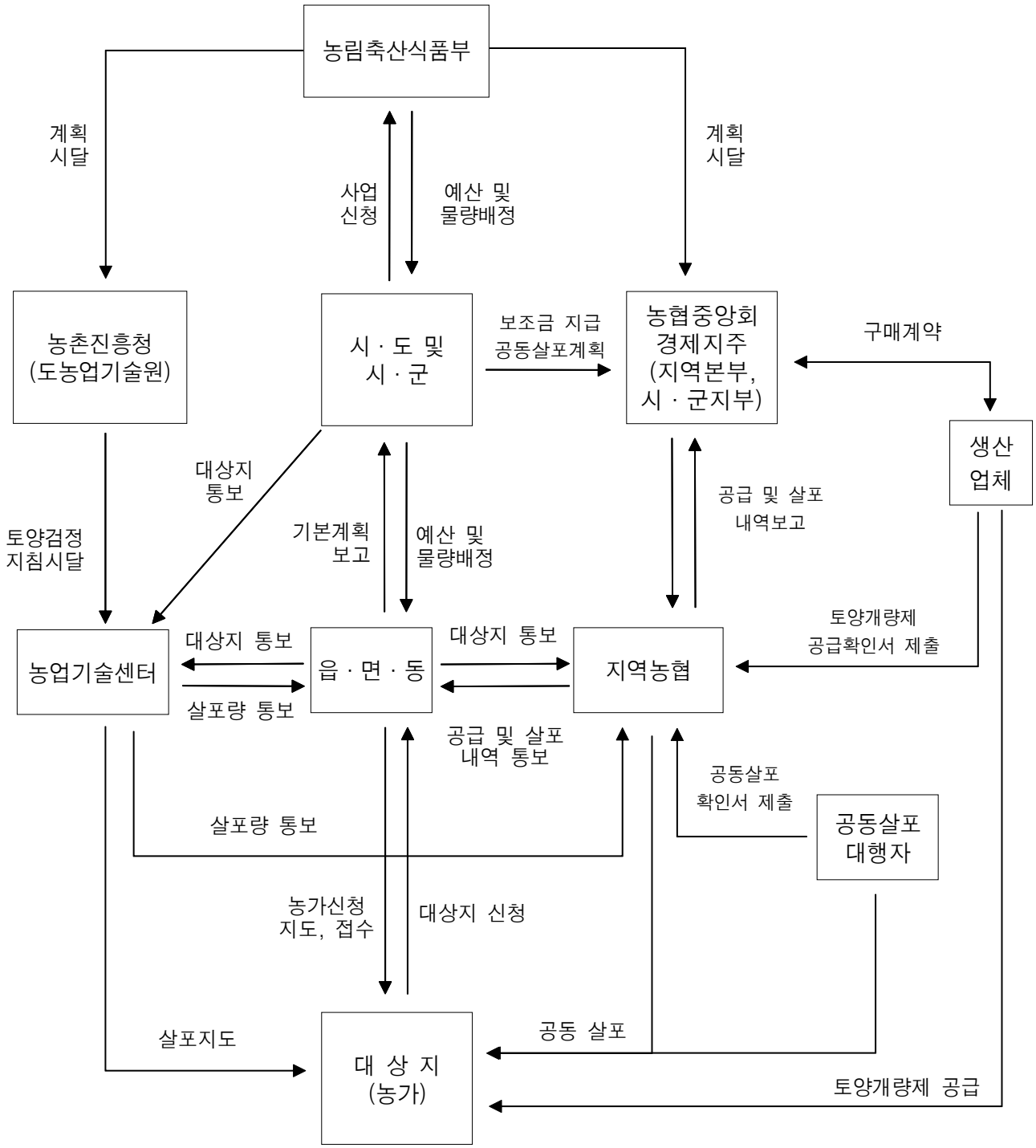

[별표3]

토양개량제 지원사업 업무 절차도

단계	담당	일정	내용
① 사업계획 수립	농식품부	N-2년 12월	· 3년 1주기 토양개량제 신청계획 수립 및 지침개정 등
	시·군·구	N-2년 12월	· 3년 1주기 토양개량제 신청계획 수립
② 사업 신청	읍·면·동	N-1년 1~2월	· 3년 1주기 및 매년 토양개량제 신청접수
③ 내년도 예산 신청	시·군·구	N-1년 3월	· 3년 1주기 및 내년도 공급면적 신청 · 내년도 공급물량 및 예산신청서 제출(→시·도)
	시·도	N-1년 4월	· 내년도 공급물량 및 예산신청서 제출(→농식품부, 지방시대위원회)
	농식품부	N-1년 5월	· 예산신청서 검토 및 예산요구서 제출(→기재부)
④ 물량, 소요량, 단가 산정	농과원	N-2년 10월	· 단위면적당 기준소요량 산정(→시군구, 농식품부) * '27년 기준소요량 산정결과는 '25.10월까지 제출
	시·군·구	N-1년 3월	· 토양개량제 공급물량 산정 * '27년 공급물량 산정결과는 '25.11월까지 제출
	농협경제지주	N-1년 11월	· 토양개량제 공급단가 산정
⑤ 세부계획 수립 등	농협경제지주	N-1년 12월	· 토양개량제 구매 및 공급계약 체결 · 토양개량제 공급계획 수립
⑥ 당해연도 예산 배정	농식품부	N-1년 12월	· 시·도별 예산 배분
	시·도	N-1년 12월	· 시·군·구별 예산 배분
	시·군·구	N-1년 12월	· 공급물량(면적) 확정 및 농협의 공급계획 안내
⑦ 토양개량제 공급	시·군·구	연중	· 토양개량제 공동살포운영위원회 구성 등 살포 추진
	공급업체	연중	· 토양개량제 공급
	지역농협	연중	· 토양개량제 공급 및 공동살포 세부계획 수립·추진
⑧ 사업점검	농식품부	연중	· 사업 상반기 점검계획 수립 및 현장 점검
	지자체	연중	· 사업 상·하반기 점검
	농관원 지자체	연중	· 토양개량제 품질검사, 유통단속
⑨ 사업비 정산	지자체	N+1년 3월	· 보조금 집행, 정산 등 · 실적 및 정산보고(→시·도, 농식품부)
	농협사군지부	매월	· 보조금 정산 서류 제출(→시·군·구)
	농협경제지주	연중	· 공급실적 보고(→농식품부)
⑩ 성과측정	농과원	N+1년 2월	· 성과지표(논토양 유효규산, 밭토양 토양산도) 측정
	농협경제지주	N+1년 2월	· 사업 만족도 조사

〔별지 제1호 서식〕

<앞면>

토양개량제 공급 신청서

신청인	주 소			마을명	
	성 명(법인명)	( )	전화번호	자택 : 핸드폰 :	
	생년월일/성별 (사업자등록번호)	년 월 일 / □ 남 □ 여 ( )	경영체등록 (등록번호)	□ 등록완료 □ 등록예정 ( )	

신청 농지									신청 내용	
순번	읍·면·동	리·통	지번	지목	지적 (㎡)	신청 면적 (㎡)	재배 예정 작물,과수	공급 희망 (월)	비료의 종류 (순번별로 택 1)	공동살포 여부
1									□규산질 □석회고토 □패화석	□
2									□규산질 □석회고토 □패화석	□
3									□규산질 □석회고토 □패화석	□
4									□규산질 □석회고토 □패화석	□
5									□규산질 □석회고토 □패화석	□
6									□규산질 □석회고토 □패화석	□
7									□규산질 □석회고토 □패화석	□
8									□규산질 □석회고토 □패화석	□
9									□규산질 □석회고토 □패화석	□
10									□규산질 □석회고토 □패화석	□

주 1) 신청면적은 본인 농업경영체 등록면적을 초과할 수 없음
주 2) 농업경영체로 등록하였거나 등록 예정인 경우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, 공급단계에서 경영체 등록여부를 확인 시, 미등록 된 경우에는 정부지원 제외
주 3) 공급은 농지기준 마을단위로 공급하며, 시기는 신청인이 공급을 희망하는 월을 기재
주 4) 필지수가 많은 경우는 상기 신청농지 및 신청내용을 별지로 작성하여 첨부 가능
주 5) 지자체 공동살포 미시행 시 신청자 개별살포 실시

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6조제1항의 규정 및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(토양개량제지원 지침)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 및 비료공급 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☑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에 동의합니다.

☑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.

상기와 같이 토양개량제를 신청합니다.

20 년 월 일 신청자 : (서명 또는 날인)

임피면장 귀하

<뒷면>

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

<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 사항 >

1. 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 목적

 - **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·융자 등의 사업추진시,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**

2.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

 -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(이름, 주소 및 연락처 등)

3.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

 - **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·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**

4.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

 -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

☞ **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.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?** 동의 ☐ 미동의 ☐

<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 사항 >

1.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

 -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·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**수행기관(농협중앙회, 농협경제지주, 지역농협)**

2.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

 - **농림축산식품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**

3.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

 -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(이름, 주소, 자택전화번호, 핸드폰전화번호, 생년월일 등)

4.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

 - **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 기간 내(목적달성시 1년)**

5.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

 -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

☞ **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.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?** 동의 ☐ 미동의 ☐

【작성 요령】

-지자체는 신청서를 '농업e지'에서 출력하여 직접 또는 마을이장에게 제공하여 농업인 신청접수

〔별지 제2호 서식〕

토양개량제 공급 확인서(읍·면·동단위)

○ 토양개량제 신청지역 : ○○읍·면·동

<규산질 비료>

성명①	신청농지 주소 및 지번②	신청면적(㎡)③	기준 소요량(kg)④	신청량(kg)⑤	확정량(포)⑥	월별공급 희망시기(월)⑦	농가 서명⑧
홍길동	○○면 ○○리 ○○번지						서명 (포)
소계	○○리						
김민국	○○면 ○○리 ○○번지						
소계	○○리						
합 계	○○읍·면·동						

<석회질 비료>

성명①	신청농지 주소 및 지번②	신청면적(㎡)③	기준 소요량(kg)④	신청량(kg)⑤	확정량(포)⑥	월별공급 희망시기(월)⑦	농가 서명⑧
홍길동	○○면 ○○리 ○○번지						서명 (포)
소계	○○리						
김민국	○○면 ○○리 ○○번지						
소계	○○리						
합 계	○○읍·면·동						

【작성 요령】

①~⑦번까지는 "토양개량제 공급신청서"에 따라 '농업e지'에서 읍·면·동 담당자가 출력하여 마을이장 또는 지역농협장에게 제공

* 토양개량제 공급희망시기는 법정리·동 단위 확정(우기 7~8월 제외)

⑧ 농가서명 : 토양개량제 공급 시 마을이장이 공급한 농가에게 서명을 받고 인수물량 기재(농가별 서명란 셀 통합처리 후 서명 가능)

* 공급 이후 지역농협은 이장 등의 협조를 받아 작성한 공급확인서를 농협 시·군 지부에 제출

* 지역농협은 반드시 동 자료를 1년간 보관

〔별지 제2-1호 서식〕

토양개량제 살포 확인서(읍·면·동 단위)

○ 토양개량제 신청지역 : ○○읍·면·동

<규산질 비료>

성명①	주소②	신청면적(㎡)③	공급물량④	살포방식(개별,공동)⑤	공급시기(월)⑥	미살포시 향후살포 시기(월)⑦	살포 확인⑧
홍길동	○○면 ○○리 ○○번지						서명 (포)
김민국	○○면 ○○리 ○○번지						
합 계	○○읍·면·동						

<석회질 비료>

성명①	주소②	신청면적(㎡)③	공급물량④	살포방식(개별,공동)⑤	공급시기(월)⑥	미살포시 향후살포 시기(월)⑦	살포 확인⑧
홍길동	○○면 ○○리 ○○번지						서명 (포)
김민국	○○면 ○○리 ○○번지						
합 계	○○읍·면·동						

【작성 요령】

①~⑤번까지는 토양개량제 공급결과에 따라 읍·면·동 담당자가 출력하여 마을이장 또는 지역농협장에게 제공하여 확인

⑥~⑧번은 지역농협이 마을이장의 협조를 받아 작성하여 읍·면·동에 제출

* 지역농협은 반기별로 확인하여 읍·면·동에 제출(상반기 6월, 하반기 11월까지)
* 읍·면·동은 상기 자료를 받아 미살포 농가는 확인을 하여 살포토록 하고, 살포 여부 확인 점검
* 지역농협은 반드시 동 자료를 1년간 보관

〔별지 제2-2호 서식〕

토양개량제 공동살포 확인서

○ 토양개량제 공동살포지역 : ○○읍·면·동

성 명①	주 소②	살포비종 ③	살포면적 (㎡)④	살포 물량⑤	살포일자 (월/일)⑥	살포 확인⑦
홍길동	○○면 ○○리 ○○번지					서 명
김민국	○○면 ○○리 ○○번지					
합 계	○○읍·면·동					

확인자⑧ 소 속 :
성 명 : (인)

살포자 주 소 :
성 명(법인명) : (인)

【작성 요령】

①~⑤번까지는 “공동살포운영위원회” 결정에 따라 읍·면·동 담당자가 공동살포 대행단에게 제공

⑦ 살포확인 : 토양개량제 신청 농가

⑧ 확인자 : 현장 확인 가능한 자(마을이장, 지자체, 농협 담당자 등 1명 이상)

* ⑦ 살포확인자와 중복 불가

* 공동살포 대행단은 공동살포 완료 후 공동살포 확인서를 작성하여 지역농협에 제출

* 지역농협은 반드시 동 자료를 1년간 보관

〔별지 제3호 서식〕

토양개량제 미살포(방치) 확인서

신청인	주 소	시·군·구 읍·면·동 리·통 번지	마을명		
	성 명 (법인명)	( )	전화번호	자택 : 핸드폰 :	
	생년월일/성별 (사업자등록번호)	년 월 일 / □ 남 □ 여 ( )	사업연도 (살포연도)	( )	

☞ 토양 개량제 미살포(방치)시 조치사항 안내

* 살포 기간 내에 살포하지 않거나, 조치사항 미 이행시 다음 주기 지원대상에서 제외
* 미살포(방치)된 물량은 다음연도 살포대상 농지에 살포하거나 기존 농가 중 추가살포를 희망하는 농가에 제공하여 살포

미살포(방치) 장소			1차 확인(방치우려)					
읍·면·동	리·통	지번	확인일	비종	물량 (포)	보관·포장 예정일	살포 예정일	비고
성환읍	신방리	122						

○ 보관·포장방법 등 관리방안 :

상기와 같이 토양개량제 미살포(방치) 사실을 확인합니다.

20 년 월 일

신청인 : (서명 또는 날인)

확인자 : (서명 또는 날인)

입회자 : (서명 또는 날인)

미살포(방치) 장소			2차확인(이행확인)					
읍·면·동	리·통	지번	확인일	비종	물량 (포)	보관·포장 여부 (○,×)	살포 여부 (○,×)	비고
성환읍	신방리	122						

○ 미살포(방치) 물량에 대한 처리방안 :

상기와 같이 토양개량제 미살포(방치)에 따른 조치결과를 확인합니다.

20 년 월 일

신청인 : (서명 또는 날인)

확인자 : (서명 또는 날인)

입회자 : (서명 또는 날인)

* 입회자는 신청인이 확인되지 않거나 조치 등을 거부하는 경우 관계공무원, 이장 등을 대상으로 확인받는 경우에 활용